

1

세이브더칠드런 및 아동안전보호정책 소개

-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인종, 종교,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임
-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, 아동의 신체적, 정신적 폭력 및 착취, 학대를 막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『아동안전보호정책(Child Safeguarding Policy)』을 규정하고, 모든 직원은 업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음
-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에 있어 기관차원의 책임을 강조하고, 일부 몇몇 기관이 아닌, 아동을 대하는 모든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『아동안전보호체계』를 확산하고자 함.

2

「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」 사업 개요

- 추진 배경
 - (아동학대의 지속적 증가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제정·시행(2014년)되었으나,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는 지속적 증가 추세
 - *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: 18,700건('16)→ 22,367건('17)-> 24,604('18)-> 30,045('19)
 - (종사자에 의한 학대 발생) 아동을 대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어야 하나, 최근 종사자들에 의한 학대 사건 등이 국내·해외에도 빈번하게 보도됨

- * (국내)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심리치료 캠프에 참가한 학대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(2014. 10. 14 경향일보)
- * (해외)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아이티 구호활동 과정에서 성매매 사건 발생 (2018. 2. 19. 국민일보)

- * 연도별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: 1,249건('16)→ 1,655건('17)-> 1,529('18)-> 2,354('19)

- (아동교육 및 돌봄 기관 내 학대 발생 증가)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, 아동복지교사, 외부강사들에 의한 학대 사건이 증가함.

* (국내) 제주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이들에게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됨.
 “제주, 상습적 아동 성적학대 자원봉사자에 중형 선고”
 (2019. 06. 07 헤드라인제주)
 “교사 학대에 원생 간 성추행까지...‘비리’ 아동복지시설”
 (2016. 12. 02 연합뉴스)

*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학원, 아동복지시설, 기타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 : 1,927건('16)→ 2,952('17건)→ 3,655건('18)→ 4,623건('19) → 전체사례 중 10%해당

* 출처.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

- 위와 같은 기관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학대 징후들을 발견, 대처할 수 있으므로 아동안전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,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등 아동안전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함.

□ 사업 목적

-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및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실시하여, 기관의 아동안전보호정책(ChildSafeguarding Policy) 수립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위험발생을 최소화하고 위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.
- 지역사회 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모든 기관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점차 확산시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.

3

아동안전보호의 범위

- 아동안전(Child Safety) 영역과 아동안전보호정책 개념
 - 아동안전보호의 위험 영역은 교통사고, 생활안전사고(추락, 물리적 충돌, 이물질 삼킴, 익사 등), 개인정보노출, 자연재해, 아동 간 다툼으로 인한 상해, 실종·유괴, 아동학대 등 아동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함.

- 아동안전보호정책 개념
 - 아동안전보호정책(Child Safeguarding Policy)은 아동을 대하는 기관 그 자체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이 되기 위해 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업무, 규정, 절차, 사업활동 등에 적용하는 포괄적 안전 정책임.

4
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

-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.

5
참여지자체 및 참여기관(2020년~2023년)

- 참여 지자체 및 기관 현황 (5개 지자체/ 76개 기관)
 - 부산시/ 부산진구, 사하구, 서구, 수영구
 -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 20개소, 지역아동센터 9개소
 - 사하구 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,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
 - 서구 내 어린이집 11개소
 - 수영구 내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
 - 아동복지협회 / 아동복지시설 4개소
 - 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/ 그룹홈 13개소

6

주요 사업 내용

-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 운영 지원
 - 현관 제공, 담당관 지정, 운영비 및 담당관수당 지원
 - 아동안전보호정책 행동강령 제작 지원

-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 종사자 역량강화
 - 아동권리기본교육,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
 -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인사채용 가이드 제공
 - 아동안전보호 위험발생 시 기관 내부보고·대응 가이드 교육

- 아동안전보호 실행 컨설팅
 - 아동참여활동 진행 시 아동안전보호
 - 아동참여워크숍 진행
 -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협력기관 관리
 -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
 - 아동안전보호 이행점검

7

행사 안내 및 청중 사전 질문 방법 안내

- 행사 안내
 - 일시 : 2023년 6월 2일(금) 10시~12시
 - 장소 :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
 - 참석자 : 아동, 보호자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, 공무원
 - 발표: 2023년 6월 2일(금) 10시~12시

